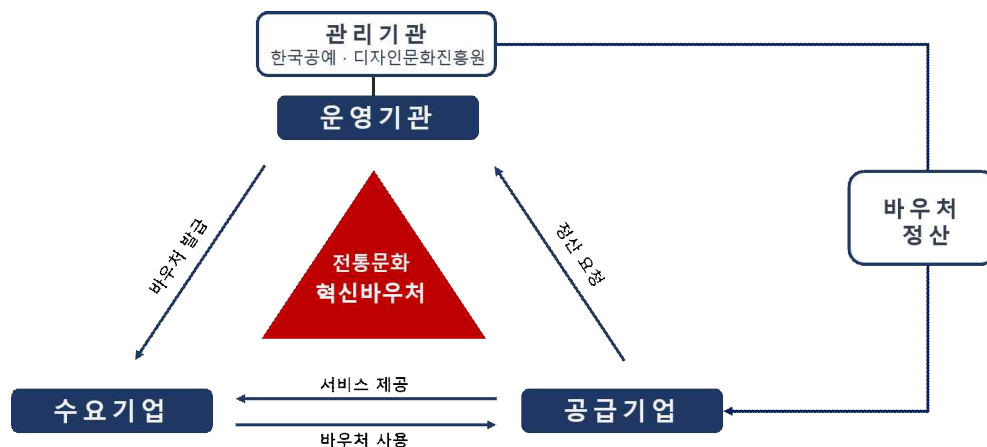


「2022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(바우처) 사업 수요기업 모집(기술혁신)」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속적인 경영환경 구축 및 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 전통문화 혁신이용권(바우처) 사업을 추진합니다. 기술혁신 부문의 '수요기업'으로 참여할 전통문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2022년 8월 22일

□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: 전통문화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및 사업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혁신이용권(바우처) 형태로 제공하여 전통문화산업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
- 사업내용: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기술혁신 및 사업고도화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혁신이용권 지급·활용
- 사업기간: 2022년 9월 ~ 2023년 2월



[전통문화혁신이용권 사업개념도(2022)]

※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'붙임1.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개요' 참고

□ 공모 개요

- 공모명: 2022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수요기업(기술혁신) 공모
- 주최: 문화체육관광부
- 주관: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- 공모기간: 2022년 8월 22일(월) ~ 9월 21일(수)
- 선정발표: 2022년 10월 2주차(예정) *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공지(게시) 예정
- 선정규모: 전통문화분야 산업체 2개사

□ 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

- 기업당 일괄 2,000만원(자부담금 10% 별도)
- 연구개발(R&D)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 및 기술료
- 전통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, 등록비 등

◆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= 지원금 + 자부담금

구분	지원금	수요기업 자부담금 (지원금의 10%)
금액	20,000,000원(부가세 포함)	2,000,000원(부가세 포함)
부담	관리기관	수요기업
혁신이용권 총액	20,000,000원(지원금)+2,000,000원(자부담금)= 22,000,000원(부가세 포함)	

※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은 신청한 지원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,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자부담금 납부를 확약하고 이행해야 함

※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금액은 자부담금이 지원금에 우선하여 소진되며, 지원금은 자부담금이 모두 소진된 시점부터 사용됨

□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※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요기업은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되며, 선정 이후라도 신청대상 및 기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신청자격: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

① 전통문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

◆ 관련 법령

-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제1항 자목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②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(법인 또는 개인)

※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)를 소지한 경우, 1개의 사업자만 신청 가능

○ 신청 제외대상: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
-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 중인 경우
-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③ 휴·폐업 중인 경우
- ④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경우
- ⑤ 당해연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사업에 운영기관 또는 공급기업으로 중복하여 참가하고 있거나 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
 - 공급기업 또는 운영기관과 대표자가 같은 기업
 - 공급기업 또는 운영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가 같은 기업
 - 공급기업 또는 운영기관 대표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
- ⑥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부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
- ⑦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(혁신이용권 잔액 보유) 중인 경우
- ⑧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사업에 3회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⑨ 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⑩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원사업 제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⑪ 최근 3년 이내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(하위조직 포함)
- ⑫ 그밖에 신청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총괄·관리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
□ 제출 서류

○ 제출 서류 목록

연번	제출 서류(※ 제출형식: PDF)	서류정보	내용
①	수요기업 신청서 1부	서식 1	
②	수요기업 사업계획서 1부	서식 2	
③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-	국세청 홈택스 발급본
④	지방세/국세/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	-	공모시작일 이후 발급본
⑤	표준재무제표 1부(최근 3년)	-	2019년~2021년 표준재무제표
⑥	중소기업확인서 1부	-	중소기업현황발급시스템 발급
⑦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서식 3	
⑧	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1부	서식 4	
⑨	서약서	서식 5	
⑩-1	법인등기부등본	-	
⑩-2	법인인감증명서	-	
⑩-3	사용인감계	서식 6	
⑪	회사소개서 1부(자유 형식)		

※ 서류 작성 시, '붙임2.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제출서류 작성 방법' 참고

※ 신청서류 제출 방법: "신청양식.zip"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,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

★ 압축파일명: 기술혁신 기업명.zi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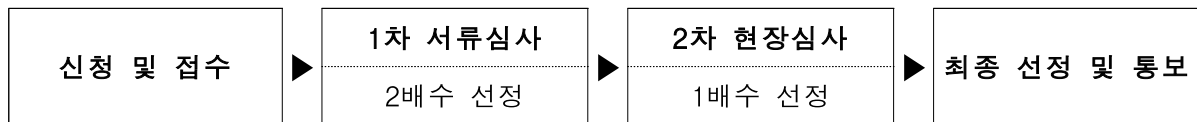
※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, 사업계획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(선정 평가 탈락)은 신청 기업에게 있으므로 제출 시 유의

□ 신청 및 접수방법

- 신청기간: 2022년 8월 22일(월) 9:00 ~ 9월 21일(수) 23:59 까지
 - ※ 접수 마감 시간 내에 '신청서와 제출서류 일체를 최종 제출'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
- 신청방법: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(www.kcdf.or.kr)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
- 접 수 처: **t_voucher@kcdf.kr**
 - ※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: [공모신청] 기술혁신_기업이름
 - ※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중복 지원 불가 : 서비스 분야(기술혁신/사업고도화) 택일

□ 평가 및 선정

- 선정 절차



- 평가방식
 - (1차)서류심사: 신청기업의 자격요건,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포함하여 지원 타당성, 혁신이용권 활용계획 구체성·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(2배수 선정 예정)
 - (2차)현장심사: 현장점검을 통해 혁신이용권 실행 가능성 평가
- 평가방법: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모두 진행한 후 산술 평균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수요기업 선정
- 평가기준: 지원 타당성(40), 혁신이용권 활용계획 구체성(40), 기대효과(20)

□ 신청 및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①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수요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
 - ※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공급기업 최종 선정이 완료된 이후라도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※ 신청 자격의 제외대상에 해당함에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본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, 향후 타 지원사업 신청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②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플랫폼에 이미 등록된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경우, 해당연도에는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다.(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동시 참여 불가)
- ③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협약 기간 내 수요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, 관리기관은 신청 자격 재검토에 따른 협약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.
- ④ 동 사업에 지원·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 동의를 전제한다.

□ 기타 유의사항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부정하게 정부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,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 고발 진행 예정
- (규정위배 제재조치)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거나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(부정행위 제재조치)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정행위 판정시 자격취소, 부정수급액 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부가금(5배 이내)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
- (신용조회 동의) 동 사업에 지원·참여하는 기업은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 동의를 전제함

□ 문의

- 기술혁신 문의 02-958-4972, t_voucher@kcdf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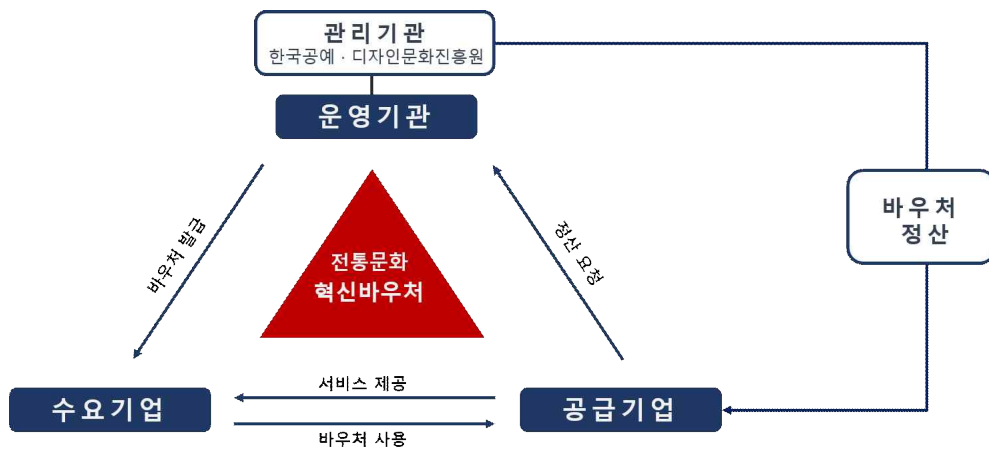
◆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과 진흥원 운영 규정 및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◆ 세부사업 계획, 집행 및 정산, 결과보고서 검수 등의 사항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과 진흥원 운영 규정,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

- 붙임** 1.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개요 1부
2.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제출 서류 작성방법 1부. 끝.

□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: 전통문화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및 사업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(바우처) 형태로 제공하여 전통문화산업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
- 사업내용: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기술혁신 및 사업고도화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혁신이용권 지급·활용
- 사업기간: 2022년 9월 ~ 2023년 2월



[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개념도(2022)]

○ 지원분야:

분야	프로그램	서비스 유형
기술혁신	기술혁신 및 지식재산권 관리	- 연구개발(R&D)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 및 기술료 지원 등 - 전통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, 등록비 지원 등
사업고도화	비대면역량 강화	웹사이트, 메타버스 등 제품(서비스)의 디지털화
	소규모 시제품 제작 지원	다품종 소량의 시제품 제작
	경영역량 강화 및 시장 트렌드 분석	- 품질 향상 및 관리 전략 등 일반경영지식 교육 - 상품·서비스·비즈니스 모델 기획 등 - 시장동향 분석, 시장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조사, 분석과 컨설팅
	홍보/마케팅	국내·외 및 온·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, 온·오프라인 제품 홍보
	디자인역량 강화	BI·CI 개발, 패키지 디자인, 앱 디자인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활용 지원

2022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프로그램 서비스 메뉴판

□ 수요기업 역할

○ 프로그램 서비스 상품 선택·신청

- 프로그램별 서비스 상품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을 선택하여, 서비스 요청

※ 혁신이용권 사용은 사업 신청시 선택한 서비스 분야의 프로그램 상품만 가능

○ 혁신이용권 사용

- 서비스 요청을 수락한 공급기업으로부터 받은 혁신이용권 서비스 계획서 및 사용협약서 검토 → 사용협약 체결 → 서비스 상품 이용

※ 최종 선정시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↔수요기업↔공급기업 간 3자 사용협약 체결 원칙

※ 혁신이용권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혁신이용권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시, 혁신이용권 지원금 자동 환수처리 됨

○ 결과 제출

- 지원받은 서비스에 대한 사업 수행 결과물 제출
- 사업수행 결과를 바탕으로, 지원금은 공급기업에 지급

※ 수요기업 사업결과평가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실시 예정(사업결과평가 세부 일정 별도 안내)

붙임2

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제출서류 작성 방법

□ 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 목록

연번	제출 서류(※ 제출형식: PDF)	서류정보	내 용
①	수요기업 신청서 1부	서식 1	
②	수요기업 사업계획서 1부	서식 2	
③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-	국세청 홈택스 발급본
④	지방세/국세/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	-	공모시작일 이후 발급본
⑤	표준재무제표 1부(최근 3년)	-	2019년~2021년 표준재무제표
⑥	중소기업확인서 1부	-	중소기업현황발급시스템 발급
⑦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서식 3	
⑧	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1부	서식 4	
⑨	서약서	서식 5	
⑩-1	법인등기부등본	-	
⑩-2	법인인감증명서	-	
⑩-3	사용인감계	서식 6	
⑪	회사소개서 1부(자유 형식)		

※ 서류 작성 시, '붙임2.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제출서류 작성 방법' 참고

※ 신청서류 제출 방법: "신청양식.zip"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,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

★ 압축파일명: 기술혁신_기업명.zip

※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, 사업계획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(선정 평가 탈락)은 신청 기업에게 있으므로 제출 시 유의

□ 제출서류 작성 방법

① 신청서 [서식1 참조]

- 수요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자료로 활용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신청서 상에 미기재시 불인정

※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중복 지원 불가: 서비스 분야(기술혁신/사업고도화) 택일

※ 기술혁신 분야에 한해서, 혁신이용권 지원 금액 한도 내 최대 2건의 프로그램 서비스 사용 가능

② 사업계획서 [서식2 참조]

- 다음의 기본 항목에 대하여 수요기업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수행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

구분	내 용
1. 기업소개	• 현재 사업 운영현황(핵심기술, 강점 또는 차별점, 타겟 고객, 수익모델, 전통문화 연관성 등 기재)
2. 회사연혁	• 설립, 상호/대표자변경, 법인전환, 자본 증자, 사업장/공장 이전 등의 주요 사항
3. 대표자 경력	• 대표자 경력
4. 사업 신청 동기	• 사업 신청 이유 및 목적,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, 지원 필요성 등
5. 혁신이용권 사용 계획	• 필요 프로그램 서비스, 서비스 활용 계획 등
6. 기대효과	• 혁신이용권 사용을 통해 기대하는 정성적 및 정량적 효과
7. 총 소요 예산	• 국고보조금+기업분담금(국고보조금의 10%)
8.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	• 최근 3년간 정부 추진과제 참여 내역

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 후 사본 제출

④ 지방세/국세/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

- 공모시작일 이후 발급본

⑤ 표준재무제표(최근 3년)

- 표준 재무상태표(대차대조표) 및 손익계산서 제출 필수
-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제출
- 3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,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 (단,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제출 필요)

⑥ 중소기업 확인서 1부

-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<https://sminfo.mss.go.kr>) 발급

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서식3 참조]

- 모든 사업참여 인력이 서식을 출력하여 각자 1부씩 작성(날인)
- 작성일을 기준으로 참여 인력이 미정인 경우, 대표자 포함 최소 3인 이상이 작성(사업장 총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총 인원 작성)

⑧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[서식4 참조]

- 서식 출력 후 작성(날인)하여 스캔본 제출

⑨ 서약서 [서식5 참조]

- 서식 출력 후 작성(날인)하여 스캔본 제출

⑩ (해당시)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

- 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⑪ (해당시) 회사소개서 1부
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으로 전통문화산업 종사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출
- 전통문화산업 관련 실적,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작성